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42호 2021. 9. 2.(목)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80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사천시 고시 제781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4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7
- 사천시 고시 제24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사항 고시 ----- 8
- 사천시 고시 제24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9
- 사천시 고시 제24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10
- 사천시 고시 제2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 1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127호 주식 매각 공개 목록 공고 ----- 12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118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회 람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사천시 규칙 제78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위원회”를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처리기한 내에”를 “처리기한까지”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규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중 “규칙에 규정한 것”을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 조례/ 규칙/ 고시 등		
지자체		연번	
소관 부서	국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팀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	제정일 :		
	최근 개정일 :		
검토 개요	<근거 규정>		
	○		
	<주요 내용>		
	○ ○ ○		
추진일정	<존치 필요성>		
	○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 제목			
지자체		연번	
소관 부서	국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팀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		건의제기 (건의일자)	
건의내용	(조례/규칙/시행규칙 명)		
당초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추진일정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사천시 규칙 제78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허위”를 “제5조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한다.

4.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6조의 제목 “(대상업체선정 통보)”를 “(대상업체 선정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로, “검토·심의”를 “검토·심의하여 대상업체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24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9. 2.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21- 6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21년 8월 20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해안둘레길 내 관광객 볼거리 제공(포토존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대방동 759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의 면적 : 36㎡
6. 점용·사용의 기간 : 2021.8.20.~ 2035.12.31.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청 (관광진흥과)
 -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24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9. 2.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21- 7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21년 8월 20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어선접안용 부잔교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노룡동 975-3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의 면적 (변경)
 - 당초 : 322㎡(직접 74㎡/ 간접 248㎡)
 - 변경 : 807.3㎡(직접 134㎡/ 간접 673.3㎡)
6. 점용·사용의 기간 : 2021.7.11.~ 2034.11.10.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24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9. 2.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21- 8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21년 8월 20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침수피해 방지/피복석 및 반파공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대방동 759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의 면적 : 962㎡
6. 점용·사용의 기간 : 2021.8.20.~ 2050.12.31.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청 (재난안전과)
 -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24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9. 2.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21- 9호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21년 8월 27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수위관측을 위한 연결관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741번지선
5. 점용·사용의 면적 : 2m²
6. 점용·사용의 기간 : 2021. 8. 27. ~ 2035. 12. 31.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 나. 주 소 :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13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2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9. 2.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21- 5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21년 8월 27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2021년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추진(투석)
4. 점용·사용의 장소
 - 서포면 비토리 산47-9번지선
5. 점용·사용의 면적 : 2,000m²
6. 점용·사용의 기간 : 2021. 8. 27. ~ 2021. 12. 4.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비토어촌계장 강윤근
 - 나. 주 소 : 서포면 비토안길 10-26

사 천 시 공 보

제 742 호

사천시 공고 제 2021-1127 호

주식 매각 공개 목록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12 (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에 의거하여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매각·백지신탁대상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사 천 시 장

주식 매각 공개 목록						
소 속		직 위		직급 등		성 명
사천시의회		시의원		-		김경숙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 수				
배우자	(주)동서이앤씨 건축사사무소	1,900	매각	19,000	2021.8.18.	개인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1118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 복지증진 대상에 최근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미혼부를 추가하여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 등진 대상에 특성 성(性)으로 규정한 부분 삭제 및 미혼부 추가(안 제1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 742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 화: 055)831-2665, 팩스: 055)831-6018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모든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복지”를 “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요보호여성”을 “한부모가족·미혼모·미혼부·가출여성·요보호여성”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시 밧”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밧”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7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제2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p>	<p><삭 제></p>

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
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성별영
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복지증진) 시장은 사회구
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
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추진하
여야 한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
·가출여성·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자립 지원

2. ~ 5. (생략)

제19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
여야 한다.

③ (생략)

제20조(양성평등 주간) ① (생
략)

제16조(복지증진) -----

----- 복지 -----

-----.

1. ---- 한부모가족·미혼모·
미혼부·가출여성·요보호여성

2.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양성평등 주간) (현행 제1
항과 같음)

제2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30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기금운용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지

제2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36조(기금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
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삭 제>

사 천 시 공 보

제742호

관 련 법 규

□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